

전주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5가단13296 판결 [재보증금 청구의 소]

전 문

원고전북신용보증재단

피고재단법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변론 종결2015. 8. 19.

판결 선고2015. 10.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5,882,01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재보증계약

1) 원고와 피고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거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원고는 2012. 12. 28. 피고와 사이에, 위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원고가 이행한 신용보증채무금의 범위 안에서 피고가 이를 보전하기로 하는 재보증계약(재보증기간은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이다. 이하 "이 사건 재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재보증계약서 제10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피고의 재보증금액은 원고가 이행한 신용보증금액에 재보증비율인 50%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다.

3) 한편 이 사건 재보증계약서 제18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과 관련해서 '재단'은 원고를, '중앙회'는 피고를, '원보증'은 원고가 소기업 등을 위하여 한 신용보증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제18조(면책사항 등) ① 재단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회는 보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한 경우 재단은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8. 원보증 취급 또는 보증채무 이행 업무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② 제1항 각호에 의한 면책범위는 '재보증계약서 위임요령'에서 정하는 면책기준에 의한다.

4) 재보증계약서 위임요령 제1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0조 면책기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전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다.

3. 계약서 제18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한 때 :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앙회의 부담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 금액

나. 원고와 유한회사 A의 신용보증약정

1) 유한회사 A(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2011. 9. 30.경 원고에게 신용보증금액 100,000,000원에 대한 신용보증계약을 청약하였다.

2) 원고는 [별지]에 기재된 관련 규정에 따라 신용보증심사를 하여야 하는바, [별지] 기재 보증심사 운용요령 제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원고는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잔액 578,000,000원이 있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신규보증을 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만 보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신규보증을 할 수 있다.

3) 나아가 이 사건 회사의 청약 금액은 100,000,000원이므로 원고는 [별지] 보증심사 운용요령 제8조 제1항에 따라 표준심사를 진행해야 하고, 표준심사항목 중에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보증신청일 현재 1년 이내에 자가사업장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별지 보증심사 운용요령 제3조 제4항은 이러한 사정을 '권리침해'라고 정의하고 있다)이 없을 것이라는 항목도 있다.

4) 이 사건 회사가 소유하는 군산시 B에 있는 유한회사A 제2동호 건물의 등기부등본에 2011. 7. 11. 채권자 주식회사 수퍼테크코스틸, 청구금액 162,800,000원으로 하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합966 가압류결정에 기한 가압류 등기(이하 "이 사건 가압류 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가 2011. 8. 25. 이 사건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보증신청일 현재 1년 이내에 자가사업장에 가압류가 있었으나, 원고 업무 담당자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표준심사기준표를 작성하였다.

5) 원고는 보증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회사의 신용보증계약청약 건을 회부하였고, 위 보증심사위원회는 2011. 10. 6. 신용보증 가능 의결을 하였다.

6) 원고는 2011. 10. 10.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100,000,000원, 보증기한 2012. 10. 9.까지로 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장차 이 사건 회사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그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할 경우 이 사건 회사가 그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등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당시 대표이사였던 C는 이에 연대보증하였다.

다. 보증사고의 발생 및 피고의 보전금 지급 거절

1) 이 사건 회사는 2011. 10. 10.경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9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이 사건 회사는 영업부진에 따른 자금사정 악화로 원리금 납입을 연체하는 보증사고를 냈고, 원고는 2013. 4. 17. 이 사건 회사를 대위하여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출원리금 91,911,40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재보증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보전금 45,882,011원의 지급을 요청하였는데,

피고는 2014. 12. 18. 이 사건 재보증계약서 제18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원고가 신용보증 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음을 이유로 보전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제1항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재보증계약에 기하여 보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다만 아래 제3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의 면책 항변이 인정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의 면책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취급 업무를 함에 있어서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재보증약정 제18조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전액 면책되어야 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취급 업무를 함에 있어서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보증금 청구금액 전부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첫째, 원고는 '심사일 기준 당시의 가압류' 여부를 확인하면 되는 5,0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에 대한 소액심사보증 취급비율이 전체 보증의 99%에 달한다.

둘째, 원고 담당자는 2011. 6. 1.부터, 원고 부서장은 2011. 7. 1.부터 처음으로 5,000만 원 이상의 표준심사업무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업무 당시 순간적으로 표준심사항목인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보증신청일 현재 1년 이내에 자가사업장에 대한 가압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소액심사항목인 '심사일 기준 당시의 가압류' 존재 여부만 확인하면 되는 것으로 착오에 빠졌다.

셋째, 원고 담당직원은 컴퓨터 모니터를 보고 표준심사기준표를 작성하였는데, 위와 같이 순간적으로 '1년 이내'라는 요건을 간과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감안할 때 설령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전부 면책이 아니라 보전금의 일부 감액 사유에만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의 재보증금 청구 금액 대부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첫째, 이 사건 재보증계약서 제18조 제1항 및 재보증계약서의 위임요령 제10조 제3호의 해석상 원고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피고가 언제나 전부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 보전금이 일부 감액만 되는 경우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둘째, 보증심사 운용요령 제19조 제2항 제3호 및 보증심사 운용요령 적용기준 제15조 제2항에 의하면 원고 이사장이 신용도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면 권리침해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회사의 운영상태와 시장상황을 보면 원고 이사장이 충분히 권리침해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었다.

셋째, 실제로 원고 보증심사위원회에서도 이 사건 회사의 신용도를 평가하여 만장일치로 신용보증 가능 결의를 하였다.

나. 판단

1) 원고의 고의, 중과실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제1항 기초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체결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취급 업무를 함에 있어서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첫째, 원고가 보증심사 운용요령이나 보증심사 운용요령 적용기준 등의 업무처리지침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그 지침에 명시된 내용대로 업무처리를 하여야 한다.

둘째, 보증심사 운용요령 제8조 제1항 제3호 라목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보증신청일 현재 1년 이내에 자가사업장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이 없을 것'을 심사항목으로 명시하고 있고, 원고 담당자가 작성해야 하는 표준심사기준표에도 '신청기업 및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최근 1년 이내 다음 사실이 없을 것', '라. 자가사업장 또는 자가거주주택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등'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보증심사 운용요령 제8조 제2항은 '표준심사에 의해 보증하는 경우에는 심사항목에 충족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이 사건 회사가 소유하는 군산시 B에 있는 유한회사A 제2동호 건물의 등기부등본에 2011. 7. 11. 이 사건 가압류 등기가 마쳐졌다가 2011. 8. 25. 이 사건 가압류 등기가 말소된 사실이 명기되어

있어서 등기부등본만 검토하면 위 심사항목에 저촉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넷째, 5,000만 원 이하 보증을 하는 소액심사의 경우 보증심사 운용요령 제7조 제2항 제3호 다목에 의하면 '신청기업 및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에 대하여 보증신청일 현재 자가사업장 또는 자가거주주택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이 없을 것'이 심사항목이기는 하지만, 원고 담당자들이 표준심사 업무를 맡은지 얼마되지 않아서 소액심사와 순간적으로 혼동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담당자들이 드물게 신청이 들어오고 신용보증금액이 더 큰 표준심사업무를 맡았으면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통상적으로 예견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심사요건을 소액심사와 순간적으로 혼동하였다는 주장이 경험칙상 쉽사리 수긍되지도 않는다.

2) 원고의 일부 감액 주장에 대한 판단 제1항 기초사실,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일부 감액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첫째, 이 사건 재보증계약서 제18조 제1항 본문 및 재보증계약서의 위임요령 제10조 본문에 규정된, 여러 면책 사유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보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문언은 여러 면책 사유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도록 하기 위한 일반적인 문언이고, 이를 구체화한 재보증계약서 위임요령 제10조 제3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앙회의 부담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금액'이 면책된다는 문언까지 종합적으로 보면 피고는 원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피고의 부담이 증가된 부분 전부에 대하여 면책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원고의 중과실로 인하여 원래는 체결하지 않았어야 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의 부담이 증가된 부분은 원고가 청구하는 보전금 전액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셋째, 보증심사 운용요령 제19조 제2항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가압류 등기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이사장이 판단하는 경우로서 ② 심사기준일 현재 해제된 경우에 한하여 권리침해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전자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2011년 상반기 매출액 약 1,185,000,000원에 당시 차입금 1,938,000,000원이었던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청구금액 162,800,000원의 이 사건 가압류 등기는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넷째, 보증심사 운용요령 제23조의 위임을 받은 보증심사 운용요령 적용기준 제15조 제2항이 '가압류, 가처분은 심사기준일 현재 해제사유가 발생되고 권리침해 사유가 보증신청기업의 영업활동과 무관하거나 사업장 또는 기업의 신용도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것으로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권리침해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역시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보증심사 운용요령 적용기준은 2014. 1. 2. 개정된 것으로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위 조항이 시행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다섯째, 원고는 보증심사 운용요령 제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잔액 578,000,000원이 있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신규보증을 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만 보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신규보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고의 보증심사위원회가 소집되어 보증 가능 의결을 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관련 규정에 따라 표준심사를 진행할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중대한 과실로 표준심사항목을 누락하였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면책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성훈

별지